
선결제·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

2020. 4. 8.

관계기관 합동

순서

I. 최근 내수·민생여건 점검	1
II. 금번 대책 기본방향	2
III. 세부 추진과제	3
1. 공공부문 : 최종구매자 역할 강화	3
2. 민간부문 : 내수기반 보강	7

I. 최근 내수·민생여건 점검

□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 등으로 민생 여건이 크게 악화

- (내수) 전례없는 수준의 외출 자제, 방한관광객 급감 등으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·영세자영업자 어려움 가중

* 방한관광객수(전년동기비, %) : ('19)14.0 ('20.1월)15.3 (2월)△43.7 (3월)△94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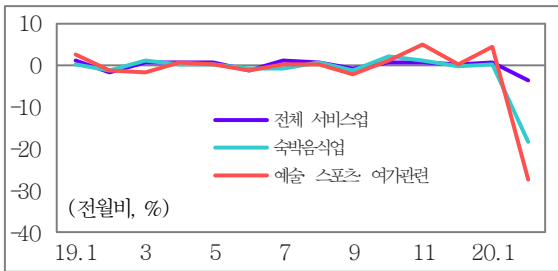
- 2월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, 숙박·음식, 예술·스포츠·여가,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

* 서비스업 생산(전월비 △3.5%)은 통계 작성('00.1월) 이래 최대폭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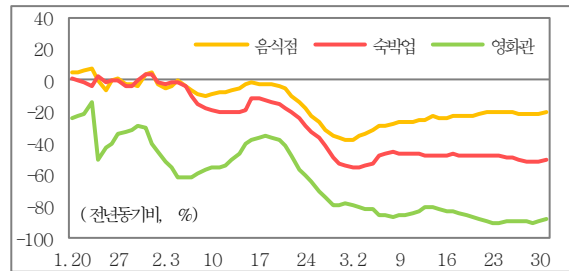
↳ (숙박·음식업)△18.1 (예술·스포츠·여가)△27.2 (소매업)△6.8 (기타 개인서비스)△6.3

- 최근 속보지표 상으로도 내수업종의 매출 감소세 지속

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



주요 서비스업 매출 속보지표 추이



- (소비자심리) 두 달 연속 급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**냉각** (CSI : ('20.1)104.2 (2)96.9 (3)78.4 <'09.3월 72.8>)

- (고용) 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**종사자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**되면서 **코로나19 영향이 점차 가시화**되는 모습

* 고용부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(만명) : ('19.4/4)33.7 ('20.1월)28.9 (2월)16.3

* 통계청 취업자수 증감(만명, 경제활동인구조사) : ('19.4/4)42.2 ('20.1월)56.8 (2월)49.2
<조사시점 : 통계청 경황조사는 2.9~15일, 고용부 사업체조사는 2월말 >

- 특히, 숙박·음식, 예술·스포츠·여가 등에서 종사자수가 감소 전환되는 등 내수업종을 중심으로 **일자리 상황 악화**

* 종사자수 증감(만명, '20.1→2월)

: (숙박·음식)1.7→△5.3 (예술·스포츠·여가)0.0→△0.6 (개인서비스)0.4→△0.4

⇒ 강력한 방역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,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·민생 여건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

II. 금번 대책 기본방향

- ◇ 정부는 그간 **방역을 통한 사태 “조기종식”**에 총력을 기울이면서,
 - ①32조원 실물피해대책, ②100조원+a 금융안정대책, ③18조원* 수준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대책 등 피해극복 지원에 범부처 **정책역량을 총집중**하여 대응중
 - *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유예 포함
- ◇ 금번 대책에서는 **강력한 방역 대응** 과정에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**내수 수요의 보완방안**을 강구
 - 공공부문부터 **최종구매자**로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비·투자 실행
 - 민간부문의 자발적 **“착한 소비”**를 촉진하고, 취약계층 **추가지원**을 통해 **내수기반을 보강**

코로나19에 따른 내수 · 민생의 어려움 완화

공공부문 : 최종구매자 역할 강화

공공부문 先결제 선도

- ✓ 소비절벽 방지를 위한 先결제·後사용
- ✓ 비축가능 물품·자산 조기구매
- ✓ 운영비 하반기 지급분 先지급

건설투자 당겨 집행

- ✓ 정부 SOC 투자 당겨 집행
- ✓ 공공기관 건설·장비 투자 조기집행 확대

공공계약절차 완화

- ✓ 신속한 공공구매 진행을 위한 계약절차 단축
- ✓ 조달업체 부담경감 및 지원강화

민간부문 : 내수기반 보강

자발적 先결제 인센티브 제공

- ✓ 피해업종 대상 소비에 소득공제 80% 적용
- ✓ 기업 先결제·先구매시 세액공제 1% 적용
- ✓ 착한소비 캠페인 추진

중소·개인사업자 세부담 추가 완화

- ✓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허용
- ✓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

취약차주 재기지원 강화

- ✓ 피해채무자 대상 채무조정 (원금상환 유예 등) 조건 우대
- ✓ 연체채무자 대상 최대 2조원 연체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

Ⅲ. 세부 추진과제

1. 공공부문 : 최종구매자 역할 강화

[1] 先결제·先구매를 통한 내수수요 조기창출

□ 그간의 대책은 내수 수요의 급격한 위축 과정에서 발생한 **소득·경영피해 지원** 등 부담 완화에 방점

☞ 이번에는 **피해업종 수요**를 당장에 **직접 보강**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을 **과감히 탈피**하여 **先결제·先구매**를 도입·시행하는 방안 마련

① (외식·서비스) 소비절벽 방지를 위해 최대한 **先결제, 後사용**

- 외식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외식업체에 대한 **업무추진비 선지급**(900억원)

▶ 집행목적·장소·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

▶ **예산집행지침 개정**을 통해 **선지급 가이드라인*** 마련(기재부, 4월중)

* ①업체 균형선정, ②집행사항에 대한 사전 내부결재, ③업체와 간이약정 체결, ④업체 이용 후 증빙서류 보완, ⑤연내 미사용금액 환수 등

-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국외여비 잔여 **항공권 구입물량의 80%를 선지급**(1,600억원)

▶ 각 항공사와 운항 노선별 운임 범위안 및 **항공권 선구매 표준계약서*** 마련, **항공권 선구매 안내**** 등(국토부, 4월초)

* ① 국가·노선 미지정, ② '20년내 사용, ③ '20년말 잔액정산 등

** 장거리는 대형항공사, 근거리는 저비용항공사(LCC) 우선 선정

▶ 기관 주거래 여행사가 있는 경우 **여행사에 선지급**하고, **항공권을 일정 수준 선구입**할 수 있도록 유도(각 기관, 4월말)

-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**국제행사·회의·지역축제** 등 계약을 조기체결하고 **최대 80%를 선지급**(1,400억원)

- **화훼 수요 확대**를 위해 '1사무실 1꽃병(1 Table 1 Flower) 캠페인*'을 확산하고 **선구매 적극 활용**(170억원)

* 지역별 화훼정보, 표준구매 가이드라인 배포, 실적점검(농식품부)

- **위탁용역비***를 통한 외주사업(공공기관 유지·정비 등)은 **조기계약** 하고 **최대 80% 선지급**(5,100억원)

* 광고·홍보비, 정보화 컨설팅, 송배전 설비 등 유지·정비, 안전진단·시설관리 등

- **문화·여가·외식분야**에 사용하는 **맞춤형 복지 포인트**의 상반기 내 **전액집행 방침**을 중앙정부에서 **지자체·공공기관까지 확대**(1,900억원)

- 우수 부서, 직원 등에 대한 **격려금·포상금**을 현금 대신 **코로나19 극복 관광상품권***으로 **선구매**하여 **조기지급**(170억원)

*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관·발행, 관광·숙박·렌터카 등에 '20년 말까지 사용

② (물품·자산) 비축이 가능한 자산 등을 중심으로 조기구매 추진

- 필요한 **비품·소모품** 등을 **상반기 최대한 선구매**(8,000억원)

▶ 온라인 개학 대비 **취약계층 학생 원격수업** 지원을 위한 **스마트 기기***(1만대), 노후 책걸상, 칠판 등 **학교비품** 구매

*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이하) 수급자 대상 학교보유분 우선 대여, 부족분 조기 구매

▶ **방역·위생물자·의약품** 등과 **공공기관 고유사업** 관련 안전·시험·검사·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**비품·소모품 확보**

- 수요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**자동차업계** 지원을 위해 **업무용 차량** 하반기분 **1,600여대 선구매**(500억원, 상반기 2,400 → 4,000대)

* (중앙정부) 243대, (지방정부) 349대, (공공기관) 1,049대

▶ 생산업체와 **생산규모·일정, 구매단가 등 협의**(산업부, 조달청, 4월)

▶ **'업무용 차량 구매 관리시스템'**을 통해 월별 구매실적 관리(산업부)

-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연중 구매예정인 **국내생산 경유 15만 배럴** 및 **원유 49만 배럴** 상반기 **선구매**(310억원)

- 하반기 구매예정인 **마스크 비축물량**(추경 700억원) 중 일부를 상반기중 **조기계약**하고 **최대 80% 선지급**(450억원)

③ (운영비) 국립대기숙사·병영시설 등 **임대형 민자시설(BTL)**의 하반기 **운영비 70%**를 **선지급**(500억원)

* 최종 혜택이 영세운영업체·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사업시행자와 약정

※ 예산집행지침 개정, 표준계약서 마련 등은 신속히 추진하여 즉시 시달

[2]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·공공기관 건설투자 당겨 집행 규모 추가확대

-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사중단·공기지연이 발생하는 등 **건설활력이 크게 위축**되고 **지역경제의 어려움도 가중**
 - ☞ **그간의 긴급 특별용자, 계약조정 등의 피해지원을 넘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해 정부·공공기관의 역할 강화**
- ① **국도·철도·항만·하천정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건설투자 당겨 집행 규모 추가확대(14.0→14.6조원)**
 - ▶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, 관급자재 선구입 등을 위한 선금 지급 확대
 - * 국가하천정비 및 유지보수, 항만개발, 경자구역 기반조성 등 집행 확대
 - ▶ 집행률에 기반한 사업간 재원조정 및 민자사업 보상금 선투입
 - * (김포~파주 등 고속도로) 내역 조정을 통해 보상금 조기 집행 (포천~화도, 광명~서울 등 고속도로) 민자사업 보상금 선투입
- ② **SOC·에너지 등 분야에서 공공기관 건설·장비투자 조기집행 규모 확대(30.3→30.9조원)**
 - ▶ **SOC 분야는 고속도로·고속철도 건설 등을 중심으로 확대**
 - * (도로공사) 포항~영덕 등 고속도로 건설 선금 확대, 자재 조기구매 (철도공단) 포항~삼척, 서해선 조기발주, 철도 자재선금 지급
 - ▶ **에너지 분야는 발전소 건설 및 미세먼지 저감, 노후설비 보완 등 설비 보강을 중심으로 확대**
 - * (동서발전) ESS 보급사업, 동해 바이오매스 연료 저장고 신축사업 선금확대 등

[3] 조기집행 가속화 지원을 위한 공공계약절차 완화

- 행사 취소, 관급공사 지연 등으로 재정조기집행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**구매자로서의 정부 역할 강화**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
 - ☞ **원활한 재정집행과 민간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국가 계약제도절차 등을 최대한 완화**하여 '20년 한시 적용
- ① **신속한 공공구매 진행을 돕기 위한 계약절차 단축**
 - **입찰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**하고, **수의계약 범위도 확대**
 - ▶ **입찰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**
 - * (물품·용역) 5천만원→1억원, (종합공사) 2억원→4억원, (전문공사) 1억원→2억원 등
 - ▶ **코로나19 관련사업의 긴급 수의계약을 위해 수의계약 사유 추가***
 - * (現) 천재·지변, 긴급한 행사 등 → (改) 현행 + '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'
 - ▶ **경쟁 불성립시 신속히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하기 위해 '1회 유찰시'에도 수의계약을 허용(계약일수 10일 단축)**

- 별도 입찰없이 주문이 가능한 **나라장터 품목**(現 약 1,400개)을 **확대***하고 **심사·등록기간도 12→8주로 단축**

* 부처 수요 전수조사(조달청, ~4월)

- '20.12월까지 한시적으로 **긴급입찰 발주**를 **의무화**하고, 계약·대가 **지급기간은 최대한 단축**

- ▶ **긴급입찰을 통해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 → 5일로 단축**
 - * 긴급입찰 사유에 “예산 조기집행 운영” 추가, '20.12월까지 긴급입찰 발주 의무화
- ▶ 공사 입찰공고기간 중 실시하는 **현장설명을 원칙적으로 생략**하고, **대면평가인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전환**
- ▶ **소규모 계약**(공사: 10억원 미만, 물품·용역: 2억원 미만)은 **적격심사 기간을 7일 → 4일 이내로 단축**, **심사항목을 평균 14개 → 8개 내외로 간소화**
- ▶ **선금 및 계약대가 지급 법정기한 단축**
 - * (선금) 14일→5일 이내, (하도급대금) 15일→5일 이내, (대가) 5→3일 이내 (검사검수) 14→7일 이내

② 조달참여 비용 등 **기업부담을 경감**하고 **지원 강화**

-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**조달참여의 걸림돌**이 되지 않도록 **선금 상한을 확대(70→80%)**하고, **입찰보증금 등 부담 대폭 인하**

- ▶ 국가기관 **선금 지급상한을 70 → 80% 상향 조정**
- ▶ **입찰·계약보증금 50% 인하 및 입찰보증수수료 면제**
 - * (입찰보증금) 입찰금액의 5→2.5%, (계약보증금) 계약금액의 10→5%
(입찰보증수수료) 입찰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
- ▶ 업체의 선금수령 애로요인이었던 **민간보증기관 선금 보증료율 일괄 20% 인하**
(건설공제: 0.45→0.36%, 전문건설공제: 0.39→0.31%, 서울보증: 0.57→0.46%, 4.20일~)

- **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계약불이행** 등의 경우, **지체상금 등 납품책임을 면책**

- ▶ **코로나19가 계약불이행의 직접 원인인 경우, 미이행 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징수,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면제**
- ▶ **코로나19에 따른 부품조달 곤란, 생산차질 등으로 납품 지체시 지체상금 면제**

- **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·경북지역 등 특별재난지역**에 **소재**하고 있는 **조달기업은 추가로 지원**

- ▶ **2억원 미만 물품·용역의 납품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제품 구매 의무화**(전문성·기술성을 요하거나 해당지역에 충분한 공급자가 없는 경우 제외)
- ▶ **특별재난지역 소재 수요기관이 지역기업 제품을 구매시 다수공급자 계약의 2단계 경쟁 제외**(1억원 이상 계약은 5개 이상 업체 2차 경쟁입찰 → 등록업체 즉시 선정)

※ 공공계약제도 개편의 경우, 계약예규·계약지침은 **4월중 즉시 개정·시달**, 국가계약법·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완료

2. 민간부문 : 내수기반 보강

[1] 세제 인센티브 지원 등 통해 先결제·先구매 민간 확산

□ 코로나19로 약화되어 있는 내수활력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함께 수요 조기창출을 위한 **민간부문의 동참**이 필수

☞ 先결제·先구매가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**세제지원**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 **범국민적 캠페인** 전개

① 가계의 先결제·先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**피해업종***에 대한 신용·체크카드 등 **소득공제율**을 일률적으로 **80%로 확대**(4~6월)

* 음식·숙박업, 관광업, 공연 관련업, 여객운송업 등

구 분		~2월	3월	4~6월	
신용카드	피해업종 사용분	15%	30%	30%	80%
현금영수증·체크카드 등	피해업종 사용분	30%	60%	60%	80%
전통시장·대중교통		40%	80%	80%	

② 先결제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참여 유도

▪ 우선, 법인으로 물품·용역 구매 예정금액을 先결제 가능하도록 **유권해석*** 예정(금융위)

* "현행법상 허위매출 및 불법 자금유통과 관계없는 카드 先결제는 가능"

▪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·용역 등을 先결제·先구매하는 경우, **소득세(개인사업자)·법인세(법인)에 세액공제 1% 적용**

【기업 先결제·先구매 세액공제 요건】

- ① (대상) '20.7~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② (구입처) 소상공인 ③ (지급시기)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'20.4~6월중 지급

③ 통신3사, 경제단체 등과 협업하여 **착한소비 캠페인**을 추진하고, 방송·통신, SNS 등 **다양한 매체**를 통해 홍보

* 통신3사, 경총, 중기중앙회, 소상공인연합회, 중소기업지원기관(11곳) 등 참여

【착한소비 캠페인 추진 사례】

- ▶ 통신3사 : 대구·경북 등 피해지역 제품 홍보영상을 IPTV에서 송출중
▶ 경총/소상공인연합회 : 선결제·구매를 위한 '착한소비자운동' 협약(3.31일)

[2] 中企·개인사업자 세부담 추가 완화

□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결손기업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, 그간의 신청기반 세정 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협력비용 발생

☞ 피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추가 경감하고, 국세청 직권으로 세금 납부기한 등을 일괄 연장하는 방식 활용 확대

①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허용

* '19년 연간 이익 & '20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

: (現) '21년 세금 신고시에 '20년 발생 결손금을 공제·환급

→ (改) '20.8.31일까지 신청시 '20년 상반기 결손금 조기 공제·환급

② 금년 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0여만명 모든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국세청과 소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('20.6.1. → 8.31, 납세신고는 '20.6.1일까지)

* '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(과세미달자 제외) : 691만명

▪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*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 연장

* ①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내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

②주요 피해업종(의료·관광·음식숙박 등) 중 환자 발생·경유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

[3] 연체위기에 처한 취약차주 재기지원 강화

□ 그간 단계적·다층적 피해지원에도 불구하고,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*이 아닌 가계대출에 대한 지원은 일부 사각지대 존재

*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확대, 만기연장, 이자상환유예 既지원

☞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위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추가대책 마련 (사각지대 해소)

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,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 우대 지원

②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 채권을 캠프가 매입*하여 상환유예·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

* 대상 :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